

『공정과 투명』한 절차로 『행정의 품격』을 위한

□□□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0. 5. 28.



감사담당관

□□□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1. 감사개요

- 기 간 : 2020. 5. 12 ~ 5. 15(4일간)
- 대 상 : □□□
- 감사범위 : 2017. 6. 17.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 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2. 감사결과

○ 행정상

(단위 : 건)

계	본 처 분			현지처분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 의	
11	4	4	-	3	-	

○ 재정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지 급
계	2,674	2,504	170		
본 처 분	2,424	2,424			
현지처분	250	80	170		

○ 신분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비고
-	-	-	-	-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신 분 상		행 정 상			재 정 상		
		징계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징수	감액
계	8건	-	-	4	4	-	2,424	2,424	
1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소홀			1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날짜 유효기간 확인 소홀				1				
3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절차 부적정				1				
4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부적정				1				
5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1				
6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1					
7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2,374	2,374	
8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미정산			1			50	50	

○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신 분 상		행 정 상			재 정 상		
		징계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징수	감액
계	3건	-	-	3	-	-	250	250	
1	축산약품 보관관리 소홀			1					
2	지역개발채권 매입소홀			1			170	170	
3	국내여비 지급 소홀			1			80	8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표지 회수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표지 미회수 현황

구 분	자격상실		성 명	반납통보서 우편송부건수	비고
	기 간	사 유			
장애인 등록증	2017. 9. 17 ~2020. 4. 7	사망	A 등 40명	송부1, 미송부 39	
장애인 자동차표지	2017.12.28 ~2019.11.12	차적변경 (폐차)	B 등 7명	미송부 7	

2. 위법·부당내용

(1)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회수 부적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부적정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 등)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장애유형 및 차량정보 등을 기록하여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의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1)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망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A 등 40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하였고, 자동차 폐차로 차적변경이 된 B 등 7인에 대해서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미회수하였으며,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표지에 대해 반환통보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 등록 취소 등으로 미회수된 장애인등록증 40건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7건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날짜 유효기간 확인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위임일자 미작성 현황

신 청 기 간	위 임 자	신 청 인	비 고
2017. 6. 19. ~ 2020. 5. 4.	C 등 454건	D 등 454건	

2. 위법·부당사항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 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신청 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되어 있다.

- 「서명 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감사고 시 문서 감정의 대상이

되므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임을 확인하지 않고 위임날짜가 누락된 위임장 454건을 수리·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시 위임장의 유효기간 기재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절차 부적정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현황(2018년 ~ 2020년)

(단위 : 건, 천원)

총합계		2018		2019		2020(~4월)		지급방법	비 고 (1명 기준)
건수	지급 금액	건수	지급 금액	건수	지급 금액	건수	지급 금액		
56	20,780	24	8,360	24	9,320	8	3,100	1인(총무) 일괄지급	회 당 20,000원

2. 위법·부당내용

- 「지방회계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통장, 즉 정당한 채권을 가진 개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함에도 총무 명의의 계좌로 모든 수당을 일괄 입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통장 회의 참석수당을 개인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기재사항 누락 현황(2017년)

(단위 : 건, 천원)

총합계		2017. 8월		2017. 10월		2017. 11월		2017. 12월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2,583	3	559	3	625	2	550	5	849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2,583천원을 현금영수증카드로 급량비 등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사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서명을 하는 등 회계증빙자료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하자검사 현황

구 분		정기 하자검사			만료검사			비 고
		대상	검사	미검사	대상	검사	미검사	
계		100	69	31	26	1	25	
2017년	상반기	26	26	0	6	0	6	만료후 검사
	하반기	10	0	10	10	1	9	
2018년	상반기	16	16	0	3	0	3	
	하반기	13	0	13	3	0	3	
2019년	상반기	12	12	0	4	0	4	
	하반기	8	0	8	0	0	0	
2020년	상반기	15	15	0	-	-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26건(정기 100건, 만료 26건)에 대하여 정기 34건, 만료 25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하자검사 기간 만료후 검사실시)
 -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연도	소방계획서수립	소방안전관자 선임(통보)	소방훈련 및 교육	비 고
2017	수립	선임	-	
2018	미수립	선임	2018.03.21. 2018.11.27.	
2019	수립	선임	2019.03.20. 2019.10.25.	소방관서합동
2020	미수립	선임	-	

나. 위법·부당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또한, 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 소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7년~2018년에는 연 2회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소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374천원 (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 급 액		증·감 (회수)	공사기간	지 적 내 용	도 급 자
		계약	정산				
계	3 건	29,860	27,486	2,374			
■■■2통 인도 보수공사	투수블럭 275㎡	6,900	5,754	1,146	2018.04.19 ~2018.05.16	보조기층 미시공	㊦㊦건설 A
■■■2통 정자방1길 마을안길 포장공사	투수블럭 290㎡	7,250	6,243	1,007	2018.05.01 ~2018.05.25	보조기층 미시공	■■■건설 B
▲▲4통 쉼터 정비공사	L형옹벽 12m 고압블럭 170㎡	15,710	15,489	221	2017.10.24 ~2017.11.17	거푸집 무단 변경 시공	■■■건설 B

2. 위법 · 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 【■■■2통 인도 보수공사 외 2건】을 추진하면서 설계의 공정을 일부 누락하여 시공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 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2,374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2통 인도 보수공사 외 2건】을 추진하면서 설계의 공정을 일부 누락하여 시공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의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공사비 2,374천원을 지급하였기에 즉시 회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미정산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50천원 (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 급 액		증·감	공사기간	지 적 내 용	도 급 자
		계약	정산				
□□□ 주민자치센터 바닥 보수공사	가드레일 설치 144m	18,570	18,520	50	2017.06.08 ~2017.06.28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미실시	●●산업(합) A,B

2. 위법·부당내용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 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라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주민자치센터 바닥 보수공사】를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정산함에 있어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5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 주민자치센터 바닥 보수공사】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정산함에 있어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50천원을 지급하였기에 즉시 회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범 사 례

① 행복한 삶, 찾아가는 경혈건강

I. 추진개요

- 기 간 : 2019. 06. 01. ~ 12. 31. / 14:00~16:00,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방문장소 : 관내 경로당 17개소
- 방문인원 : 12명(주민자치센터 수강생 7, 주민자치위원 5)
- 내 용 : 경혈체험 및 손 마사지, 말벗봉사 등

II. 추진실적

- 2019.06.12. : △△1통 경로당, △△●●길 경로당 / 30명
- 2019.08.14. : ▲◆2통 경로당, ◆◆3통 경로당 / 40명
- 2019.09.18. : ▣▣경로당, ▣▣6통 경로당 / 30명
- 2019.10.16. : ◎◎3·5통 경로당, ◎◎4통 경로당 / 40명
- 2019.11.22. : ◎◎1통 경로당,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자 / 100명
- 2019.12.11. : ◎◎6통 경로당, ◎◎7통 경로당 / 40명

사 진



III. 기대효과

- 노령화로 혼자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극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재능기부 기회 부여